
Policy and Law Report _Vol.19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6.19.~6.25.) -

June 26,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6/19~6/25)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R&D 등 8개 중점과제 추진 정부가 세계 최상위 수준의 국가 R&D 성과를 활용하여 양자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新산업·新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의 딥사이언스 창업* 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 고난도의 과학적 지식과 R&D를 기반으로 하는 신형 기술분야의 도전적 창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상정하여 발표하고, 글로벌 혁신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기술분야를 선점할 수 있는 딥사이언스 창업·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됨 동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 창업 R&D에 '27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하여, R&D 창업기업을 2배 확대('22년 2,879개 →'27년 5,500개, 누적)하고,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도 높이는('20년 75% →'27년 85%)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1] 딥사이언스 맞춤 창업 활성화 지원 ①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 R&D 지원 < (예시)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S-Impact(science impact)) 주요 내용 > ② 경쟁형 방식의 강한 지식재산 발굴·확보 ③ (가칭)딥사이언스 마중물 펀드 조성 - 딥사이언스 창업기업에 대한 시드투자 등 초기 성장을 지원하여 VC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딥사이언스 마중물 펀드를 조성('27년까지 최대 4,500억원)하고, 정책금융 대상에 딥사이언스 분야를 포함하여 딥사이언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공급을 추진 ④ 핵심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지원	2023-06-21

부처	내용	일시									
	[전략2] 딥사이언스 창업 성장 생태계 조성 ①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활용 및 기획형 창업 지원 강화 ② 해외시장으로 이어지는 창업 성장 사다리 구축 ③ 딥사이언스 분야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확대 ④ 공정한 성과배분 및 보상방식 다양화										
산업통상 자원부	•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모델 창출 및 수출산업전략 수립 등 발표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년 제4차 전체회의 개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녹색성장 新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기업들의 성장 성공모델 창출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재난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전 사회적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함 또한, 지난 4월 수립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을 발표함 <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 주요 내용으로는 ① 탄소감축 및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육성전략 마련 - ’30년까지 민관 합동 약 145조원 규모의 투자·R&D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및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 기대 - 공공조달과 연계하여 초기수요를 견인하고, 공공브랜드 지원, 국제협력 강화 등 수출 지원을 통해 ’30년 수출규모 100조원 달성 추진 -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강화할 계획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새로운 기후변화 전망에 맞춰 제3차 국가 적응대책(’21~’25)을 강화 -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여, 4대 정책 및 12개 과제 마련 <table border="1"> <tr> <td rowspan="4">4대 정책</td><td>① 과학적 기후 감사·예측 및 적응 기반 고도화</td><td> • 기후위기 감시 체계 및 예측 강화 •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td></tr> <tr> <td>② 기후재난 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td><td> • 홍수·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 •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 대비 건강피해 사전예방 강화 </td></tr> <tr> <td>③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기반 구축</td><td> • 기후변화에 따른 주택·도시·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항만·해양공간 조성 •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 • 생태계 안정성 유지 </td></tr> <tr> <td>④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td><td> • 기후변화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 • 기후재난 대비 대응역량 제고 • 적응 거버넌스 강화 </td></tr> </table>	4대 정책	① 과학적 기후 감사·예측 및 적응 기반 고도화	• 기후위기 감시 체계 및 예측 강화 •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② 기후재난 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	• 홍수·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 •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 대비 건강피해 사전예방 강화	③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기반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주택·도시·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항만·해양공간 조성 •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 • 생태계 안정성 유지	④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 기후변화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 • 기후재난 대비 대응역량 제고 • 적응 거버넌스 강화	2023- 06-22
4대 정책	① 과학적 기후 감사·예측 및 적응 기반 고도화		• 기후위기 감시 체계 및 예측 강화 •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② 기후재난 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		• 홍수·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 •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 대비 건강피해 사전예방 강화								
	③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기반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주택·도시·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항만·해양공간 조성 •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 • 생태계 안정성 유지								
	④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 기후변화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 • 기후재난 대비 대응역량 제고 • 적응 거버넌스 강화									

부처	내용	일시																										
	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Action Plan) 및 사회전반 적응인프라 강화 등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을 위한 정책과제 강화 - 폭염·한파 등 10개 위험요인별 기후위험지도 제공 및 종합정보플랫폼 구축 - 홍수·산불 등 6개 분야 기후재난 조기 경보(Early Warning) 시스템 고도화 - 미래 기후변화 위험도를 고려한 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건강관리 강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정비 추진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투자(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반영) 및 금융기관 ESG 공시 확대 < 국가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 >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24)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계획 마련 -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세부 이행지표를 설정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 구축 - 청년·미래세대 등이 이행점검에 참여하여 점검의 객관성, 투명성 강화 - 점검 결과가 정책개선의 핵심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 환류 강화																											
금융위원회	•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전문가와 함께 최근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비롯한 금융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시장안정조치 지원실적과 각 금융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정상화 방안 및 최근 금융권 연체율 동향·대응방향 등을 점검·논의함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현황 > <table> <tr> <th>업권</th><th>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용</th><th>기한</th></tr> <tr> <td rowspan="2">은행</td><td>→LCR규제 단계적 정상화(92.5→95%) 유예</td><td>'23.6말</td></tr> <tr> <td>→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05%)</td><td>'23.6말¹⁾</td></tr> <tr> <td>지주</td><td>→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10%p 완화 - 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10→20%) / 합계(20→30%)</td><td>'23.6말</td></tr> <tr> <td>보험</td><td>→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10%) 미적용</td><td>'23.6말¹⁾</td></tr> <tr> <td>저축은행</td><td>→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td><td>'23.6말¹⁾</td></tr> <tr> <td rowspan="2">여전</td><td>→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td><td rowspan="2">'23.6말¹⁾</td></tr> <tr> <td>→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p 완화(30%→40%)</td></tr> <tr> <td rowspan="2">금융투자</td><td>→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td><td>'23.6말¹⁾</td></tr> <tr> <td>→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32% 적용</td><td>'23.6말→12말²⁾</td></tr> </table> 1) 「'23.3.27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에서 3·4월말 종료 예정이던 조치 기한을 '23.6월말까지 연장발표 2) 「'23.5.25일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발 불안요인 선제적으로 차단한다」에서 기발표	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용	기한	은행	→LCR규제 단계적 정상화(92.5→95%) 유예	'23.6말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05%)	'23.6말 ¹⁾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10%p 완화 - 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10→20%) / 합계(20→30%)	'23.6말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10%) 미적용	'23.6말 ¹⁾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23.6말 ¹⁾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23.6말 ¹⁾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p 완화(30%→40%)	금융투자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23.6말 ¹⁾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32% 적용	'23.6말→12말 ²⁾	2023-06-20
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용	기한																										
은행	→LCR규제 단계적 정상화(92.5→95%) 유예	'23.6말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05%)	'23.6말 ¹⁾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10%p 완화 - 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10→20%) / 합계(20→30%)	'23.6말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10%) 미적용	'23.6말 ¹⁾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23.6말 ¹⁾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23.6말 ¹⁾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p 완화(30%→40%)																											
금융투자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23.6말 ¹⁾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32% 적용	'23.6말→12말 ²⁾																										

부처	내용	일시
	•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 확정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을 심의·확정함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은 디지털화, 지속가능금융, 가상자산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처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들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음 일례로 일본 도쿄는 거시경제 성과 부진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하락하는 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핀테크, 벤처캐피탈), 프랑스 파리(지속가능금융) 등은 특화형 금융중심지로서 급부상하고 있음 * 주요도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추이 : [도쿄] ('17.9) 5위 → ('19.9) 6위 → ('21.9) 9위 → ('22.9) 16위 → ('23.3) 21위 [SFO] ('17.9) 16위 → ('19.9) 12위 → ('21.9) 5위 → ('22.9) 5위 → ('23.3) 5위 [파리] ('17.9) 26위 → ('19.9) 17위 → ('21.9) 10위 → ('22.9) 10위 → ('23.3) 14위 이에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4대 추진 과제를 수립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정비 - (금융의 디지털 전환 촉진)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화 - (핀테크 지원 강화) 핀테크 기업의 지속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추진 ②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 디지털화, 지속가능금융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고, 외환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 - (디지털 신산업 제도화) 토큰증권, 가상자산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균형있는 규율체계 마련 -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데이터, AI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보안 규제를 선진화 -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외환제도 개선)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구조로 전환하고, 과도한 외환거래 규제를 혁신	2023-06-20

부처	내용	일시
	③ 자본시장 국제화 :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규제·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정비하고 정보접근 환경 개선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저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절차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 (자본시장 경쟁·효율성 제고)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 및 대체거래소(ATS) 설립 추진 -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투자수요 확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연기금 등의 해외 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④ 금융중심지 내실화 : 글로벌 금융강국 및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인바운드(Inbound) 및 아웃바운드(Outbound) 지원 전략,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등을 병행 추진 -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국내 금융사의 해외 영업기반 및 수익비중 확대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 (해외 금융사 국내유치 지원) 외국계 금융회사·금융인의 경영·생활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노력 및 금융중심지 홍보를 강화 - (지역별 맞춤형 전략 추진) 서울, 부산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별 금융중심지 전략 수립·추진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6.28. 시행 예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를 저공해건설기계로 정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저공해건설기계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19125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 이에 따라, 저공해건설기계의 종류를 전기건설기계와 수소전기건설기계로 구분하고, 환경부장관은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업무 등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제1조의2, 제61조제3항, 제18조제1항제4호, 제66조제3항제1호 등)	2023 06-20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12.21. 시행 예정)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 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 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 제1호라목, 제2조에 제13호 신설, 제18조제1항제4호, 제21조의2 신설 등)	2023 06-2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6.22. 시행)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의 화장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화학, 생물학, 유전학 등 관련 과목의 이수 요건을 삭제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화장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종사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종전에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에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도록 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3조제4항, 제4조제4항, 제8조제1항제2호, 제8조의2제3항제2호, 제33조제3호 삭제 등)	2023 06-22
공정거래 위원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6.20. 시행. 다만,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1조제4항 삭제, 제11조의2 신설, 제23조제3항, 제23조의2 신설 등)	2023 06-2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6.20. 시행. 다만,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의2, 제6조제9항 삭제, 제6조의2 신설, 제25조제1항 삭제, 제26조제4항제3호, 제26조의2 신설 등)	2023 06-2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2023.6.20. 시행. 다만,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9조제1항 삭제, 제20조제3항, 제20조제3항제3호, 제20조의2 신설, 제21조제4항 등)	2023 06-20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제1항) ②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수탁·위탁거래의 기간과 납품대금을 규정함 (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권한 및 처분권한을 위임함 (안 제27조제3항) ④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벌점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을 규정함 (안 별표3) 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 (안 별표4) ※ 의견 제시기간 : 2023/6/23(금)~8/2(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불공정거래개선과)로 제출	2023-06-23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을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여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최대 50%까지 차등하여 상향한 개정 고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과징금 부과 시 자진 시정, 조사·심의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상한을 상향함 (안 [별표 4의2] 제2호 다목) ②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서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 방법을 확대하고 이를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 시에도 적용함 (안 제6조 제1항)	2023-06-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번호가 오기된 것을 정정하고, 시행령 내에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함 (안 [별표1] 제2호 나목 및 제4호 나목) ※ 의견 제시기간 : 2023/6/21(수)~7/3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로 제출	
	•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안」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률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여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최대 50%까지 차등하여 상향한 개정 고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과징금 부과 시 자진 시정, 조사·심의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2차 조정 감경 상한을 상향함 (안 IV.3.) ※ 의견 제시기간 : 2023/6/21(수)~7/3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로 제출	2023-06-21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은 피해가 발생하여도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함 특히, 분양관리신탁을 통해 선분양된 건축물이 분양사업자의 준공지연 및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이에 대해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미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8조제3항)	2023-06-22
정무 위원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 관련 민원·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며,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 완화 (안 제85조제3항제4호 신설) -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외의 자를 위한 보험계약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완화하여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그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②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 (안 제175조제3항) - 보험협회는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와 보험회사 간의 보험 관련 분쟁의 자율 조정 등의 업무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023-06-2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③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합리적 조정 (안 제196조제1항제9호) - 기초서류* 기재사항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해당 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중 보험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은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함 *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④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안 제209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조 제7항제18호 신설) -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승인받아야 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u>」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의 신고 부담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 규모에 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등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하고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를 받는 사업자·사업자단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심의·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 축소 (안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제3항) -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기준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매출액 규모’는 기업결합 이후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업양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피합병회사의 자산총액·매출액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산정하는 완화된 신고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거나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기업결합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의 기업결합’은 유형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가 되는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2023-06-2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②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 (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신설) -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때 그 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③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의 운영 근거 마련 (안 제98조의2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심의·의결 단계에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송달은 당사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등재한 문서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함	
기획재정 위원회	• 「<u>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그 시세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그 시세 가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일률적으로 20%의 가액을 할증하는 제도가 없음. 또한, 상속재산의 실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상속주식에 대하여만 할증하고 상속건물 등에 대하여는 할증하지 않아 조세의 중립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세율이 최대 65%에 이르러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등 국가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63조제3항 삭제)	2023-06-19
	• 「<u>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u>」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가고 있음에도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문제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과 주민지원의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2023-06-20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이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피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와 주민 간 또는 주민 상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재원으로서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기금 출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별표 제96호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5인)」 OTT 확산을 계기로 미디어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콘텐츠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 즉각적으로 기여하며 무역 촉진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생산유발효과가 커 별도의 산업 차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거대 글로벌 OTT사들의 국내 진출 가속화에 따른 제작비 경쟁의 심화로 인해 재정적자에 시달리며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음 또한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규모의 절대적인 우위에 더해, 각국의 정부로부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20%에서 30%에 달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3%에서 10% 수준의 세액공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 대비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국내 대기업이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전체 제작비 중 기획개발에 사용되는 약 10%의 비용을 제외하고 촬영, 편집, 특수효과 등 약 90%의 제작비용이 중소제작사 등으로 유입되어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분배되는 효과가 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 25%로 확대하여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2023-06-2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2023-06-19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그런데 이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해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 등 이 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또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명시함으로써 이들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 법에 따른 각종 의무와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	
행정안전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보고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현황을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그 기간도 자의적으로 정해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및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통보한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안 제83조)	2023-06-23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희의원 등 11인)」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자들의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연체 발생 후보다는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현재 개인 채무자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체 우려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대출 등으로 전환하거나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지원 대상이 불분명해 연체 우려 채무자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동 프로그램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위기상황에 놓여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운영의 지속성 보장 등의 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2023-06-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새마을금고법」 외에도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해당 조항을 신설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고자 함 (안 제31조의3 신설, 제67조제8항 신설, 제88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의 공유 체계를 정비하여 기관 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추가하며,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지원,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보다 활성화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유데이터의 개념 규정 및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신설) -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함 -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추가함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 (안 제4조의2 신설) -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로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③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공유·관리 체계 마련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함	2023-06-22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공유되지 아니한 데이터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함 ④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확대 (안 제13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도록 함 ⑤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 (안 제18조제1항)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에 공유데이터 연계에 관한 기술적 조치·관리, 공유데이터의 저장·관리 및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추가함 ⑥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안 제21조제2항)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함으로써 그 역할을 확대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영상저작물 제작에 대한 원활한 투자 및 이용을 위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제작자에 비하여 계약지위상 약자로 정보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영상제작자에게 권리양도를 반대하거나 권리양도의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등의 특약을 요구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영상저작물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음 심지어는 영상저작물이 최초의 유통창구를 벗어나 2차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없어,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에게 연출료, 출연료 등을 지급하므로 별도의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연출료, 출연료 등은 영상저작물의 최초이용에 대한 대가이며, 한번 제작하면 무한히 복제·유통할 수 있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상 최초이용 이후의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함	2023-06-2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의 전반적인 창작의욕이 저하되어 창작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로 산업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최근 미국에서는 OTT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작가에게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이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되지 않아 작가들의 전면적인 파업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영상제작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 등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 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철현의원 등 12인)」 석유화학산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서 비용절감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대량생산을 하는 것이 특징임. 석유화학산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뤄서 생산해 내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생산과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 및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 누출, 토양·수질 및 대기 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 및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 지방세는 2.9%에 불과하고, 연간 12조 4,216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97.1%의 국세가 국가로 귀속되어 석유화학단지가 야기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유사한 지역기피시설인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3-06-19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의 목적을 석유화학단지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도모하고 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② 석유화학단지와 주변지역을 정의함 (안 제2조) ③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3조) ④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4조) 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 신청을 하도록 함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⑦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지원금을 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⑧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⑨ 석유화학입주업체는 지역상생과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⑩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⑪ 석유화학입주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2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지원·분양·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023-06-20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이처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밖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이나 부정한 활용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취득 후 임대나 양도를 통한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제조업인 경우 해당 승인을 받을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현행 법령상 공장설립 절차 체계에 편입하고자 함 이와 함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도 실제 사업을 영위한 후에 이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관리자, 입주자 등에게 분양이나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전체 면적 중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함 (안 제2조제13호) ② 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4조의3제2항제1호 신설) ③ 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15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4호 신설) ④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서 가상자산 채굴이나 거래소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부적합한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도록 함 (안 제28조의5제1항제2호 단서 신설) ⑤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28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55조제1항제1호)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나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의5제5항 신설)	2023-06-20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⑦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제조업 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을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28조의5제6항 신설 및 제55조제1항제2호) ⑧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28조의5제7항 및 제55조제2항제8호 신설) 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입주현황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의6제4항 신설) ⑩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공단, 지방공사·지방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안 제28조의9 신설)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등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승인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8조제1항) ⑫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1조의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이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폐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해당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단의 내부적인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법률에 그 근거를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2023-06-2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공단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횟수 이상 지연하지 않고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등)	
환경노동 위원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가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은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점자나 음성 등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은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의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 화학물질 등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점자나 음성 등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9항 신설 등)	2023-06-22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 중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의 계획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주관 행정기관의 장(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별도의 조정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이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2023-06-2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안 제19조의2 신설 등)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6/30(금) 14:00	제407회 국회(임사회) 제7차 본회의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6/27(화) 11:00	국회도서관, 한국인공지능협회와의 업무협약식 개최	국가전략 정보센터
	6/28(수)	금주의 서평 제634호 발간 - 인류의 여정 (저자:오데드 겔로어)	
	6/28(수)	「World&Law」 제2023-13호 발간 - 생성형 AI, 함께 살아가려면?	
	6/29(목) 14:00	제5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및 2023 한국국가정보학회 하계학술 세미나 - 대전환기 한국의 국가안보와 정보	국가전략 정보센터
예산정책처	6/26(월) 13:30	몽골 재무부 KDI 연수팀 방문 - 몽골 재무부 재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KDI 초청 연수	의정관 417호
입법조사처	6/27(화) 14:00	「기후위기, 폐자원 리사이클링 “K-순환경제” 이행 정책토론회」 개최	의원회관 대회의실

[별첨1] 제408회국회(임사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정무위	6/27(화) 14:00	법안심사1소위	- 법안 심사
	6/29(목) 10:00	법안심사2소위	- 법안 심사
	6/30(금) 13:30	전체회의	- 가상자산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기재위	6/27(화) 14:00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교육위	6/27(화) 14: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현안질의
과방위	6/21(수) 10:00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 법안 의결 및 상정 - 업무보고 (과기정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체위	6/27(화) 10:00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 심사
	6/27(화) 14:00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 심사
	6/28(수)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현안질의
농해수위	6/26(월) 14:00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6/27(화)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복지위	6/27(화) 10:00	제1법안소위	- 법안 심사
	6/28(수) 14:00	제2법안소위	- 법안 심사
	6/29(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환노위	6/27(화) 15:00	전체회의	- 간사 개선의 건 - 법안 및 청원 상정, 현안질의
국토위	6/27(화) 10:00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6/29(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26(월) 10:00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강득구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26(월) 14:00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윤미향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6/26(월) 14:00	오픈소스 SW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신성장산업포럼	의원회관 9간담회실
6/26(월) 14:00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 -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경제를 위한 발 전방안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6/27(화) 09:30	혁신 4.0 연구포럼 하계 세미나 2차 강연 - 디지털 기술 혁신과 문화예술 창작·유통환경 변화	국회 혁신4.0연구포럼	의원회관 8간담회실
6/27(화) 10:00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철도망 구상 세미나 시리즈 #1 - 중부내륙철도망	소병훈·이종배 의원실, 대한교통학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7(화) 14:00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大토론회	홍석준·이주환·이은주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대회의실
6/27(화) 14:00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장동혁 의원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의원회관 7간담회실
6/27(화) 14:00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기홍·박찬대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27(화) 14:00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여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8(수) 10:00	2023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인선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6/28(수) 10:00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6/28(수) 14:00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SMGS(화물운송협정) 현황과 미래	양기대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6/28(수) 14:00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	김수홍 의원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6/28(수) 14:00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박완주·변재일· 홍익표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6/28(수) 15:30	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의원회관 3세미나실
6/29(목) 10:00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이상민·진선미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6/30(금) 09:30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6/30(금) 14:00	인천 신도시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토론회	배준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90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6/2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4호 특집호 발간 -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6/21(수)	금주의 서평 제633호 발간 - 에너지 세계사 (저자:브라이언 블랙)	
	6/22(목)	「현안, 외국에선?」 제61호 발간 - 중국의 新국가전략 :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	
예산정책처	6/20(화)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발간	
입법조사처	6/20(화)	「이슈와 논점」 발간 -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6/21(수)	「이슈와 논점」 발간 -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 필요성과 도입 방안	
	6/22(목)	「이슈와 논점」 발간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19(월) 10:00	지하철 제연기능 현황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토론회	홍기원 의원실, 녹색신 문사	의원회관 세미나실
6/19(월) 14:00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6/19(월) 15:00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0(화) 14:00	대외전략 리셋 : 대안과 구상	민형배 의원실, 포용과 혁신	의원회관 6간담회실
6/22(목) 10:00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이인선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5. 지난주 (6/19~6/25) 법무법인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6/19(월)	방송통신(TMT)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u>
6/19(월)	중대재해	<u>대형건설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u>
6/22(목)	공정거래	<u>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제화 및 그 시사점</u>
6/22(목)	중대재해	<u>인천항만 갑문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책임자 실형 선고 및 시사점</u>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광재 변호사	T. 02-316-1624	E. kjakim@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